

2018년 하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 구분 | 순번 | 자문내용 | 비고 |
|-----------------------|----|--|----|
|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 1 | 교과용도서 선정 불공정행위 업체 과태료 처분 등 법률 자문 | |
| | 2 | 지방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민원조사 관련 법률 자문 | |
| | 3 | 유치원 원감의 행위 관련 법률 자문 | |
| | 4 |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법률 자문 | |
| | 5 | 학교폭력피해 학생 지원 범위 관련 법률 자문 | |
| | 6 | 교육용기본재산(이전사업비)에서 세금 납부 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제재 가능 여부 법률 자문 | |
| | 7 | 공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대상 면적 법률 자문 | |
| | 8 | 교육환경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계약보증금 청구 관련 법률 자문 | |
| | 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문 | |
| | 10 | 개인과의교습자의 신고 조건 및 가능 여부 법률 자문 | |
| | 11 | 강사 등 채용 전 이동학대 전력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과태료 각각 부과 가능 여부 등 법률 자문 | |
| | 12 | 교습소의 교습장소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주체 및 교습소의 교습자가 학원 등 설립 가능 여부 법률 자문 | |

| 구분 | 순번 | 자문내용 | 비고 |
|-----------|----|---------------------------------|----|
| | 13 | 사립유치원 인가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 | |
| | 14 | 사립유치원 감사처분 이행에 관한 법률 자문 | |
| | 15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 행정수행에 따른 법률 자문 | |
| | 16 | 행정심판 청구서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 |
| | 17 |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정당여부 관련 법률 자문 | |
| | 18 | 행정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한 법률 자문 | |
| | 19 | 교육감소유지 무단점유 관련 법률 자문 | |
| | 20 |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관련 법률 자문 | |
| | 21 | 총동창회비 통장 인계 관련 법률 자문 | |
| | 22 | 사립유치원 재산 매도 및 설립자 변경 법률 자문 | |
| 총계 | | 22건 | |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법 률 자 문 결 과 보 고 서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1 | 교과용도서 선정 불공정행위 업체 과태료 처분 등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동일한 사건 법원결정을 우리교육청 과태료 처분결정에 준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형법」 제123조, 제314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사건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닌 웹전시용 서책교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유사 사건 판례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관련 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 2 | 지방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민원조사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업무 담당자가 단가조사서를 임의로 수정한 행위 (단가조사서에서 3개 업체를 삭제)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업무 담당자가 특정업체를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업무 담당자는 권한 없이 단가조사서에 명시된 8개 업체 중 일부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고, 공문서인 단가조사서를 변경 하였으므로 공문서 변조죄로 의율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담당자가 단가조사서를 수정한 행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단가조사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141조제1항을 위반(공용서류무효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음. 다음으로 사인(설계회사)이 작성한 단가조사서는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에 불과하므로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담당자가 단가조사서를 임의로 수정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가사 업무 담당자의 권리남용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특정 업체가 거래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아직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 할 수는 없음.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input type="checkbox"/> 업무 담당자가 특정업체를 배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인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이 사건 담당자는 복지재정과에 구매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3개 업체의 견적서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담당자의 견적서 수정으로 인하여 ○○○○○(주)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담당자가 특정업체를 배제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업무 담당자가 최종선정업체 관계자와 유착관계 또는 청탁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업무 담당자가 특정업체를 배제한 이후로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 남아 있으므로 위 담당자도 어떤 업체가 최종 계약 당사자로 선정될지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위 담당자가 특정업체를 배제한 행위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적절함. <input type="checkbox"/> 최저가 업체인 ○○○○○○(주)의 견적서 금액만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정된 업체인 ▽▽▽▽(주)가 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담당자는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하여 ○○○○○○(주)을 배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 담당자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담당자가 특정업체를 배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음. |
| 3 | 유치원 원감의 행위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원감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파일을 학부모에게 전달한 행위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에 | <input type="checkbox"/> 답변1 - 성실의 의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p>해당하는지 여부</p> <p>-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p> <p>-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p> | <p><input type="checkbox"/> 답변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의 의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아니할 것을 사료됨. <p><input type="checkbox"/> 답변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의 의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대화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답변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의 의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4 | <p>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법률 자문</p> | <p><input type="checkbox"/>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교육부 지침에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와 유사행위(음란물제작·배포등, 음란물소지)인 경우,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지 여부</p> | <p><input type="checkbox"/> 청소년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배포 행위의 죄는, 형법상의 음화소지 또는 음화반포의 죄와는 그 행위의 객체 및 범죄구성요건 요소가 서로 달라 형법상의 위 각 범죄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해당 교사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제외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사료됨.</p>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 <p><input type="checkbox"/>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성과금 지급 지침에서 지급 제외 대상자를 ‘한정적으로 열거’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해당 규정에서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한 경우 이외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p> <p><input type="checkbox"/> 상여금 지급여부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함부로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되고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점, 관련 행정규칙은 아청법과 성폭법을 구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아청법과 성폭법이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아니한 별개의 법률이라고 하며, 해당 교사의 징계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아청법과 성폭법을 동일하게 볼 수도 없는바, 아청법과 성폭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태양이 일부 중복된다고 하여 아청법위반을 곧바로 성폭법위반으로 보고 해당 교사의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임.</p> <p><input type="checkbox"/> 위 교사의 위반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음란물소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인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등)를 아동·청소년 범죄에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는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성폭력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안의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자라는 의견임.</p> <p><input type="checkbox"/>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 제조 등)의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음란물소지)죄로 국가공무원법</p>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 제63조의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징계를 받은 자로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 5 | 학교폭력피해 학생 지원 범위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피해 학생 지원 비용을 1인당 한도 지급액으로 교육청 지침 마련 여부 | <input type="checkbox"/> 1인당 지급액수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비용 여부를 심사할 기준 마련. |
| 6 | 교육용기본재산 (이전사업비)에서 세금 납부 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제재 가능 여부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이전사업비에서 세금 납부 후 보전조치 미이행 시, 사립학교법 위반(유용)으로 제재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업체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세금부과이므로, 학교법인 임원의 교비 손실 귀책사유 없으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미해당됨. 고의성 없어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9조제6항 ‘교비회계’ 위반 사항 아님.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 처벌 받음 [대법원 2017.3.15. 선고2014도12773판결 인용]. 따라서 법적 제재 조치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취지는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에 있는 바, 사립학교법 입법취지 및 현재 이전 완료 후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중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제재 불합리. <input type="checkbox"/> 유용 또는 허가용도 외 사용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위반 아님. 따라서 벌칙규정 제73조의2 규정 적용 불가함. 단, 세금 납부지연이 이사의 직무해태에 기인할 경우 민법 제65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있어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하나 ‘이사의 직무해태 사실’ 명백한 입증 필요.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따라서, 이사장 고발 등 제재조치 가능. |
| 7 | 공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대상 면적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대상 면적에 대하여 - 지분정리 이전에 실제 면적 대상으로 대부계약 체결에 대한 적법성 여부 - 지분정리 이전에 실제 면적 대상으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 -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 시 실제 면적과 등기상 지분 소유 면적 중 어떤 면적을 적용하는지 - 지분정리 후 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을 때 재산권 행사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답변1 - 등기부상 지분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했음이 명백하므로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교육감이 등기부상의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상태에서 등기부상 유효한 지분권자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등기부상 지분합계가 1이 되어야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답변2 - 지분정리 이전 실제 면적 대상으로 대부계약 체결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등기부상 지분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는 실제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지분정리 후 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아도 재산권 행사는 가능함. |
| 8 | 교육환경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계약보증금 청구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해지된 「○○여중 교육환경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계약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책임을 부인하는데 보증기관 주장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미시공 부분으로 인하여 공사부분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과 다름이 없거나 위 건 공사 중지로 인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 등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에 대해 5회에 걸쳐 공사 추진을 촉구한 점, 공사 미이행 부분은 학생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결코 사소한 미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미시공부분도 엄연히 시공 의무가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계약보증금 청구 적절함. |
| 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토론회 자료 정보공개 청구건」과 관련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운영사례(PPT연수자료)’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적용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내용과 특히 동조 제7호의 규정을 볼 때, 귀 청이 비공개로 결정하여 통보한 자료가 위 법률 제7호가 규정하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또한 위 법 제9조가 비공개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그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공개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10 | 개인과의교습자의 신고 조건 및 가능 여부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대학(대학원 포함)생의 경우 개인과의교습자 신고의 의무만 면제된 것인지, 또는 본인이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고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개인과의교습자의 최종학력이 학습자의 학력보다 낮은 경우 개인과의교습이 가능한지 여부와 개인과의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습과목에 대한 별도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교습이 가능한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대학(대학원 포함)생의 경우 개인과의교습자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것일 뿐, 본인이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대학(대학원)생이 개인과의교습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수리를 거부할 근거 없음. <input type="checkbox"/> 대학(대학원)생의 경우 개인과의교습자의 신고의무자만을 면제하는 것이지 본인이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input type="checkbox"/> 학원법상 개인과의교습신고의무자가 면제되는 대학(대학원)생이 본인 스스로 희망하면 신고수리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개인과의교습자의 최종학력이 학습자의 학력보다 낮은 경우에도 개인과의교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개인과의교습자의 최종 학력이 학습자의 학력보다 낮다고 하여 개인과의교습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최종 학력에 따라 개인과의교습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없음.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 <input type="checkbox"/> 개인과외교습자의 최종학력이 학습자의 학력보다 낮은 경우에도 개인과외교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술, 언어 등 특수교과 교습과목에 대한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습자의 최종학력과는 무관하게 특수교과에 대한 개인교습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개인과외교습자의 최종학력이 학습자의 학력보다 낮다고 하여도 개인과외교습은 가능함. |
| 11 | 강사 등 채용 전 아동학대 전력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과태료 각각 부과 가능 여부 등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학원 및 교습소에서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없다면 이미 처분한 건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 진행 중 청문절차를 통해 제외되었던 사항을 소송 진행 중에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추가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 소송 기간 중에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조항들과 위 해당법률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없다면 이미 처분한 건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각각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부작위로 인하여 별개로 규정된 작위의무확인 의무 위반(확인 의무 위반)의 결과에 이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반자의 부작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위반자에게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두 가지 처분에 따라 550만원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면 반환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과오납 과태료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가장 중한 과태료(성범죄 전력 미조회로 인한)를 부과하여야 하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 <input type="checkbox"/> 이미 처분한 건에 대하여는 각 취소하고 가장 중한 하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미 징수한 과태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셈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행정소송에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면 되고, 만약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새로운 행정 처분(과태료 및 벌점 부과)이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 이미 학원 등록말소처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할 이유는 없어 보임. 행정처분이 가능한 기간 내에 있다면 설령 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송 중에도 별도의 사유에 기한 행정처분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학원등록말소처분취소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학원법 제4조3항 위반사실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비록 청문절차를 통해 제외되었던 사항이라도 제척기간(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도과 전이라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학원등록말소처분취소 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위법사실이 확인된 별도의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현재 학원등록말소처분취소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2017년 행정처분 진행 중 청문의 절차를 통해 제외되었던 사항이 소송 자료 준비 중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함. |
| 12 | 교습소의 교습장소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주체 및 교습소의 교습자가 | <input type="checkbox"/> 우리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교습소의 교습자가 제주도에 있는 학습자를 모집 후 제주도에서 교습을 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주체에 대한 문의 | <input type="checkbox"/> 교습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교습자가 위반한 내용은 미신고 교습이므로 현재 활동 중인 제주도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처분의 관할이 있다고 판단됨.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p>학원 등 설립 가능 여부 법률 자문</p> | <p>□ 교습소의 교습자가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강사 등 설립 및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p> <p>□ 교습소의 교습자가 신고된 관할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타시도 포함)에 복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p> | <p>□ 미신고 교습활동의 장소가 있는 시·도 관할 교육감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p> <p>□ 미신고 교습활동의 장소가 있는 관할 교육감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 미신고 교습활동의 장소가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고발(미신고 교습소) 처리하여야 함.</p> <p>□ 교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등록이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학원 강사 활동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p> <p>□ 학원법에서 교습자는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자, 학원강사 등 설립 및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립 및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됨.</p> <p>□ 교습소의 교습자가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강사 등 설립 및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p> <p>□ 교습자가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강사 등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됨.</p> <p>□ 「학원법」에 달리 금지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교습소의 교습자가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강사 등 설립 및 신고가 가능함.</p> <p>□ 신고된 하나의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으로 특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임.</p> <p>□ 교습소의 「한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타시도를 포함하여 「한장소」를 의미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어느 시도이든 한 곳에서만 교습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순회교습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됨.</p>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 <input type="checkbox"/> 교습소의 교습자가 신고한 관할 교육지원청 이외의 다른 교육지원청(타시도 포함)이라 할지라도 복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단일한 교육감의 관할 구역(즉, 시·도별 구역) 내에서의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함. <input type="checkbox"/> 다른 교육지원청(타시도 포함)에 복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는 없음. |
| 13 | 사립유치원 인가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1인만 설립자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재산소유자 전부를 설립자로 변경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위반 아님.(대법원 판례에 의거 유치원에 제공 중인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위반 아님.(‘담보’에 해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시정명령 불가능.(대법원 판례에 의거 유치원에 제공 중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 담보제공,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시정명령 가능.(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가능) |
| 14 | 사립유치원 감사처분 이행에 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교사가 2014.3.0.~2017.3.0.까지 교비를 타계좌로 전출하였기에 유치원에 대하여 회수 처분(2018.7.3.)하여 유치원에서 이행계획서(2018.10.11.)를 제출함. 해당 사안에 대한 시효의 기산점 문의. (위법행위 시작 시, 위법행위 종료 시, 회수처분 시, 이행계획서 제출 시 등에 대한 문의) <input type="checkbox"/> 회수처분에 대한 유치원의 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성 문의 |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의 이행계획서 제출은 채무자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제출일로부터 해당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되며, 이행 계획서에 명기된 일자별 각 회수시마다 나머지 채무의 시효가 새로이 중단됨.(시효의 기산)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의 이행계획서 제출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제출 일로부터 해당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되며, 이후 채무자의 이행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 시 새로이 잔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시효의 기산) <input type="checkbox"/> 해당사안에 대한 교육청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직접적 강제는 불가하고, 해당교비가 교육청 재원임을 전제로 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가능.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 <input type="checkbox"/> 교비는 유치원 경영자의 소유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한 유치원 경영자에게 귀속되므로 해당 채권에 대한 교육청의 강제집행은 불가함. |
| 15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 행정수행에 따른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청의 사전 심의 없이 신고(허가) 수리 후 당구장 영업을 하던 중 해당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행정구청 담당자가 당구장 소유자에게 교육지원청의 사후 심의를 받아오라고 하여 소유자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였으나, 행정권한자인 지자체장이 관계법령에 의거 신고(허가) 수리 한 시설물(당구장)을 사후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규제 또는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에서 심의 각하 의결하였고, 구청장이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각하를 근거로 체육시설업(당구장) 직권 취소함. 이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재신청. | <input type="checkbox"/> 사전에 교육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행정권한자인 구청장의 신중한 업무처리 검토 미흡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음. 보호구역의 관리자인 학교장은 ‘대상(당구장)업소에 대해서 학교건물, 운동장, 주통학로에서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습환경에 지장을 준다고 하기 어렵다’ 고 의견제시를 한 점,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점 등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임.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의 문제, 제도운영의 신뢰성 상실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각하 의결과 이를 근거로 한 구청장의 직권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 중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정이나 다른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등만을 이유로 그 해제를 불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조치하는 것은 위원회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비록 구청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 <p>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당국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임. 교육당국이 교육환경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것임.</p> |
| 16 | <p>행정심판 청구서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p> | <p><input type="checkbox"/>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행정심판 처분 대상인지 여부 및 행정심판 답변서 내용의 적법성 여부</p> | <p><input type="checkbox"/>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행정심판 처분 대상이나 결정에 하자가 없음.</p> <p><input type="checkbox"/>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행정심판 처분 대상이나 위법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됨.</p> <p><input type="checkbox"/>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처분이 이뤄졌다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행정청으로 봄이 상당하고 심의 결과는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심의 결과는 ‘처분’으로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p> |
| 17 | <p>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정당여부 관련 법률 자문</p> | <p><input type="checkbox"/> 급식 계약시 지정정보처리 장치인 eaT를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특수조건으로 구매계약, 정산, 계약해지까지 전자적 처리(eaT)토록 한 다라고 되어 있으나, “을”은 eaT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전자적 처리에 대해 불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갑”은 “을”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결격 업체 등록이 정당한지 여부</p> | <p><input type="checkbox"/> 계약 기타 사항 및 특수조건 제13조 3항에 의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전자적 처리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을이 eaT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 및 기타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거부하면서 갑의 전자적 처리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면, 이는 수의계약 각서 제5항 소정의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이유로 한 수의계약 결격 업체 등록은 정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투명성 제고를 위해 eaT의 도입 취지, 귀교와 “을” 사이의 계약서 본문 및 특수조건에 eaT 시스템을 통해 정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을”은 계약 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였으며, 계약체결은 eaT 시스템으로 한 점</p>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 등을 비추어 볼 때 정산 등 절차를 eaT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 계약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그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그러므로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은 정당함. <input type="checkbox"/>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3조 3항의 규정을 이행 명령이라고 하기엔 어렵고 두 계약 주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즉 합의 사항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백한 규정이 필요함. |
| 18 | 행정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행정소송 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 부담 여부 적합성 판단 |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행정소송 비용에 대하여 제반사유로 인해 피신청인 부담 요구를 중지함이 바람직함. |
| 19 | 교육감소유지 무단점유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교육감소유지의 경계 부근에 인접한 타인의 건축물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음이 의심되어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고 주민들의 출석 및 참관을 요청하였으나 협조하지 않고 고의로 불참하므로 이에 경계측량에 참석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과 측량일을 학교에서 임의로 지정하여 참석요구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만으로 불참상태에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내용증명이 자택으로 가면 불수령하므로 직장으로 보내도 되는지의 여부 | <input type="checkbox"/>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르면 측량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임. 위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에게 3일 이전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내용증명은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주소로 보내도 무방하므로 상대방이 근무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좋음. |
| 20 |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2018년 12월 민간참여 컴퓨터교실과 관련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공증을 받음,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계약 업체와 대부업체에서는 실수로 공증을 보냈다고 하나, 학교가 입을 수 있는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input type="checkbox"/>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위 공증서류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촉구함과 동시에 설치한 컴퓨터가 운영하는 기관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용증명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요구사항을 정한 기한까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체결한 운영계약에 따라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21 | 총동창회비 통장 인계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제1회부터 제18회까지 졸업생들이 모금한 동창회비를 학교에서 보관·관리하여 오다가 작년 실시한 정기종합 감사에 지적되어 동창회에 인계(반환)토록 시정요구 받았음. 이에 동창회비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총동창회에 넘기려 함에 있어 학교에서 연락 및 파악 가능한 총동창회 임원은 제1회 졸업생들로 졸업 당시 구성된 회장과 부회장 2명뿐이며 이들에게 총동창회 운영에 대한 규약이나 임원명단, 기수별 동창회 조직현황, 장부나 회계서류 등은 전혀 없으며, 총동창회를 소집 하거나 모임을 갖은 일도 거의 없는 등 동창회로서의 실체를 갖었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의 동창회(졸업1기)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단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동창회비를 인계해도 되는지 여부 | <p>(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도 같이 추가하여 발송할 필요가 있음.</p> <input type="checkbox"/> 동창회비는 졸업생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인데 1회 졸업생만으로 구성된 임원은 동창회의 집행기관에 불과할 뿐, 동창회와 법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법적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자들에게 통장과 도장을 넘기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비록 현재의 임원이 제1회 졸업생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동창회 조직에 대한 성문의 규약 등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최초의 총동창회를 구성할 당시의 대표자인 회장은 그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회장이 바뀌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동창회의 현실적인 활동 여하에 관계없이 여전히 위 단체를 대표(또는 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장에게 통장과 도장을 인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동창회 조직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도 없는 상태라면 1회 졸업생만으로 구성된 임원에게 통장과 도장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창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선고97다 20908)를 근거로 현재의 동창회는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이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동창회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동창회규약과 임원명단, 조직 구성, 총회의 운영, 재정관리 기타 동창회 활동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동창회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회장에게 총동창회비를 인계할 수 없음. |

| 연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 | | <input type="checkbox"/> 동창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는 대법원 판례(선고97다20908)를 근거로 현재의 동창회는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이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동창회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동창회규약과 임원명단, 조직 구성, 총회의 운영, 재정관리 기타 동창회 활동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동창회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회장에게 총동창회비를 인계할 수 없음. |
| 22 | 사립유치원 재산 매도 및 설립자 변경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의 설립자 사인 A가 건강 악화 등 개인 사정의 사유로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 등을 원장 사인 B에게 매도하여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가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헌법재판소 2016.12.29. 자 2014헌마296결정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가 사립학교법 위반죄로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만 시사할 뿐 설립자 변경인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사인B가 사립학교법상 유치원 설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A가 B에게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현재 판례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설립자 변경 인가 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에 준하여 인가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